

분할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한샘(이하 "분할존속회사")는 2019년 3월 22일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시공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한샘서비스(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분할이 종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주주들에게 공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구분	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한샘	부엌가구 제조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한샘서비스	실내건축업, 기계설비공사업, 창호공사업 등

2. 분할 진행경과

일자	내용
2019. 02. 23	분할 이사회 결의
2019. 03. 22	주주총회 분할승인
2019. 07. 01	분할기일
2019. 07. 04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19. 07. 05	분할등기 예정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인 당사 및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한샘서비스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주식회사 한샘 대표이사 최양하